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렘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알림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렘피스킨병 긴급 행동지침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우리 부는 렘피스킨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경북 소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 차량 등에 대해 '23년 11월 14일 12:00부터 11월 15일 12:00까지(24시간)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3.11.14. 15:00부터 실시

3.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 조치는 렘피스킨병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렘피스킨병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따라서, 관련기관 및 협회(단체), 계열사 등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불임에 따른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운반차량(소)은 생축의 상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이동중지 대상**

5. 또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축산차량 출발지의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승인 신청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우리 부(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지자체 조치사항 및 일시 이동중지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으로, 관련 기관에서는 점검반 구성 및 해당 인원의 복무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 시·도(시·군·구)

-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및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제한) 이행여부 점검
 - 시·군·구에서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이행상황 확인 후 시·도 상황실 또는 동물방역(위생)과에 결과 제출(1회/일), 해당 시·도는 관할 시·군·구에서의 이행사항을 집계하여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hje0111@korea.kr)에 제출(1회/일, 매24시간마다)

- 거점소독장소 지정신규 설치 또는 기존시설을 활용하거나 지자체 보유 소독차량, 소방차량 등을 이용한 임시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하고 일시 이동중지(제한) 시행전 축산차량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 축산차량이 소 관련 축산시설을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KAHIS의 축산차량등록시스템의 GPS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
 - 시·도(시·군·구) 방역담당자는 사전에 검역본부(방역감시과)에 KAHIS조회를 위한 권한 부여 요청 및 권한을 받아 둘 것
- 지자체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고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축산농가, 축산관계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시설 등), 종돈장 등에 대하여 점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제4항에 따라 상황전파 및 공고문 게재 등 조치
- 사료차량(지대사료 등)은 반드시 농가방문 후 거점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 후 다른 농가 방문토록 지도 철저

나. 국방부 및 경찰청

- 지자체가 설치하는 이동통제초소 운영 지원 및 축산관련 차량 이동중지 실시여부단속 협조
 - 각 지자체는 관할지역 군부대 및 경찰청에 사전 지원 및 협조 요청

다. 농림축산검역본부

- 점검단을 구성하여 지자체 조치사항 및 이동중지 이행상황 점검
- 지자체가 KAHIS의 축산차량등록시스템 GPS 정보를 활용하여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각 지자체(시·도 및시·군·구)에 KAHIS 조회 권한 부여
 -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사전에 KAHIS의 GPS 검색 권한 요청
- 지자체와는 별도로 소 관련 축산시설에 대하여 축산차량의 출입여부를 지역별, 시간대별로 점검
 - 이동중지 해제 후 지자체 실적과 비교·분석 및 지자체의 행정조치 여부 확인하고, 미흡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조치한 후 그 결과를 '23.11.16.까지 농식품부(구제역 방역과)에 제출
- GPS를 장착한 차량 및 명령 대상자에게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 시행과 관련된 내용 SMS 등을 활용한 안내

< 예시 >

- * 시행전 : 11월 14일 12:00부터 11월 15일 12:00까지 경북에 일시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조치가 실시될 예정이오니 동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거점소독장소에서 세척·소독하고, 주차 장소에 주차한 후 이동중지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점소독장소는 가까운 시·군 방역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시행중 : 11월 14일 12:00부터 11월 15일 12:00까지 경북에 일시이동중지 및 이동제한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축, 축산관련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이 제한됩니다.

라. 농협중앙회

- 공동방제단을 이용하여 주요도로 및 방역취약지(소규모 농가 등)에 대한 일제 세척·소독
 - 농협중앙회(축산방역부)에서는 매일 소독 실적을 취합하여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hje0111@korea.kr)에 제출

마.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농협중앙회 및 계열화사업자

- 소속 회원농가에 대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 소유 차량(GPS 미등록 자가용포함) 및 농가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홍보(SMS 발송 등) 실시
 - 각 협회 및 계열화사업자는 회원(소속) 농가를 대상으로 시간대 별로SMS/MMS 등을 통해 홍보하고 그 실적을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hje0111@korea.kr)에 제출(1회/일, 매24시간마다)

- 붙임 1.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2.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운영계획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방역정책과장,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축산환경자원과장, 축산유통팀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감시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역학조사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질병진단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위험평가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구제역진단과장), 행정안전부장관(가축질병재난대응과장), 국방부장관(재난안전관리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대구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동물위생방역과장),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장), 대전광역시(농생명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인천광역시(농축산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광주광역시(농업동물정책과장), 울산광역시(농축산과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경찰청장(위기관리센터장), 국립축산과학원장(가축질병방역과장), 농촌진흥청장(재해대응과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환경부장관(생물다양성과장), 농협경제제주대표이사, 농협경제제주 축산방역부, 대한수의사회, (사)전국한우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장, 한국종축개량협회,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사단법인 한국사슴협회장, 한국사료협회, (사)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육가공협회

주무관	황정은	사무관	공가	구제역방역과 전결 2023. 11. 14. 장 김정주
협조자				
시행	구제역방역과-8138	(2023. 11. 14.)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44	팩스번호 044-868-0469	/ hje0111@korea.kr	/ 대한민국 공개